대한공증인협회 주요 회무

공증업무 질의 · 회신

1 유언공정증서 경정 방법 관련

■ 질의내용

저는 유언공정증서에 관련된 사건의뢰를 받은 변호사 ○○○입니다.
유언자는 생전에 자신 소유인 토지 및 건물의 지분 2분의1을 장남에게 전부 유증하려고 유언공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언자가 사망한 후 수증자(의뢰인)가 유언공정증서를 확인하니, 유언공정증서의 별지에 '유언자의 토지 지분 중 148.9분의3과 건물 지분 2분의1'이 유증되도록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위 토지 지분 148.9분의3을 평수로 환산하면 0.909평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언공증에 참여한 증인과 평소 유언자의 의사를 확인한 수증자(수유자)에 따르면 유언자는 이 사건 공정증서 별지 부동산 목록의 대지 1/2지분 전부를 유증하고자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수증자는 유언자의 의사를 볼 때 유언자가 소유하고 있던 대지 지분 전부를 유증하고자 하였고 증인도 그러한 의도로 유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지금이라도 유언자의 의사대로 공정증서를 경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수증자의 요청에 대하여, 이미 유언자가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이 유언자의 사망 후 공증인이 공정증서의 경정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변조가 아니라 정당하다고 인정한 판결(창원지법 1992. 9. 25. 선고 90가합9001)이 있으니 참조하시어, 유언자의 진술내용과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이 명백히 다른 경우 공정증서를 경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증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의드리오니 검토하시고 의견을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경정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수증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는 유언공정증서에 유언자가 유언한 대로 기재되지 않고 오기가 있는 경우 유언자 사후에 공증인이 유언공정증서의 기재를 경정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유언공정증서의 작성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에 의하고(민법 제1068조), 일단 작성이 완료되어 당사자에게 정·등본이 교부된 공정증서에 대하여는 공증인법상 이를 경정할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그것이 비록 명백한 오기라고 할지라도 공증인 단독으로는 물론 당사자 모두 동의한 경우라도 이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작성절차를 마친 공정증서에 오기가 있다면 새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언증서의 경우 유언자 생전에 그 점을 정정하는 취지의 새로운 유언을 해두는 방법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언자가 사망한 뒤에는 오로지 유언해석의 문제만 남을 뿐입니다. 그 점에서 오기에 대하여도 당사자의 의사 해석상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질의 사안이 그에 해당할지에 대하여는 협회가 답변할 지위에 있지 아니합니다.

❷ 1인 주주회사의 대표이사 해임 주주총회 의사록 인증 업무 관련

■ 질의내용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내용의 의사록을 공증하는 경우에 전(前) 대표이사가 발행한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 주식을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1인 주주회사의 경우에는 총회 소집절차가 생략되어도 주주총회가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심지어 실제로 주주총회를 안 한 경우에라도 주주의 뜻이 담긴 의사록만 있으면 주주총회가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합니다(대법원 93다8702 판결).
질의 요지는 이러한 1인 주주회사의 경우에도 대표이사 해임 시에 전임 대표이사가 발급받은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공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회신내용

1. 질의 요지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즉,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총회 소집절차가 생략되어도 주주총회가 유효하고, 심지어 실제로 주주총회를 안 한 경우라도 주주의 뜻이 담긴 의사

록만 있으면 주주총회가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하는 대법원 판결(93다 8702판결 등)에 비추어 1인 주주 단독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를 해임한 것으로 된 의사록을 공증함에 있어서는 해임된 대표이사가 공증촉탁에 협력하지 않아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주주총회 의사록을 인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입니다.

2. 검토 의견

(1)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하고(상법 제362조), 만일 이사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이사회의 기능을 수행합니다(상법 제383조 제6항). 한편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회에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상법 제366조 제1항). 이에 따라 만일 이사회에서 이와 같은 주주의 청구에 따라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6조 제2항).

(2) 그런데 질의 내용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인 회사의 경우 소집절차 없이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하고 심지어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의사록이 작성되어도 1인 주주의 의사가 확실하면 주주총회의 성립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공증절차에서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가가 그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3) 소송절차에서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쟁 당사자 사이에 주주총회의 성립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1인 주주임을 증명하면 법관이 자유 심증주의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1인 회사의 주주총회 성립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증절차에서는 공증인이 실질적 심사권까지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인증은 재판과 달리 즉시성을 본질로 하여 촉탁 즉시 사무 집행이 완수되므로 대표이사가 1인 주주라고 확인하여 주지 않으면 공증인은 그가 정녕 1인 주주인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4) 이와 같이 소송절차와 공증절차의 차이로 말미암아 원칙적으로는 주주임을 확인하는 서면에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의 인감이 날인되고 법인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지 않는

한 공증인은 만연히 그가 1인 주주라는 것을 전제로 의사록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다만 법원에 의하여 그 주주가 1인 주주임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라면 공증인은 그에 터 잡아 법인 인감의 날인과 인감증명의 제출 없이 의사록을 인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후에 얼마든지 주식이 양도되어 1인 주주가 아닌 것으로 될 수 있음에 유념하여야 함).

❸ 소멸시효가 지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한 집행문 부여 가능 여부 등

■ 질의내용

1. 약속어음은 어음상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어음시효가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멸시효(어음시효)가 지난 어음도 집행문 부여가 가능한지요?

2. 공증인법 제38조 제3항에 의하면 "촉탁인은 증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증인법 제3조에 의하면 공증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공증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증의 효력이 없는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3. 위 제2항과 관련된 공정증서상의 촉탁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질의를 드립니다.

(1) 촉탁인이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서명 날인하는데 <○○주식회사 대표이사 ○○○>라고 표기하고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라고만 적고 <대표이사 ○○○○>는 생략한 채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유효한 서명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지요?

(2) 촉탁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외국인이 서명날인하는 경우에 공증 촉탁시 제출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상 외국인의 이름이 'LEE JOHN BYUNG JOO (이병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명날인 부분에서 <JohnLee>로만 기재되어 있고 뒤에 'LEE JOHN BYUNG JOO'라고 새긴 도장이 날인되어 있습니다. 이를 유효한 서명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3) 위 (1), (2)의 경우에 이를 기초한 증서에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요? 증서상의 '관계자의 표시'란에는 명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4.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5항에서는 공증배서된 어음의 양수인에게만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음공정증서에 대하여 지명채권양도 방식으로 양도된 경우에도 어음의 양수인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요?

■ 회신내용

1. 질의 1.에 대한 답변

집행문 부여가 가능합니다. 집행문부여기관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소멸, 변경 등과 같은 실체상의 이의사유에 관하여 조사·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실무[Ⅰ] – 집행총론 – , 2014년, 284면).

2. 질의 2.에 대한 답변

무효인 증서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만일 서명날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이 증서에 명백히 촉탁인이 서명날인하지 않았다면 그 증서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그 서명날인이 존재하긴 하는데 그것이 올바른 서명날인인지 아닌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라면 공증인이 집행문 부여를 거부하기보다는 당사자로 하여금 민사집행법상 집행문 부여에 관한 불복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3. 질의 3. (1)에 대한 답변

법령에서 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고 할 때, 기명날인은 성명을 표시하고 도장을 날인하는 것을 말하고, 서명이란 성명을 자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에 의해서 행위가 이루어지고,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59조 제2항). 따라서 법인의 대표가 서면으로 어떠한 법률행위를 한다고 할 때에 기명날인은 그 서면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인 사실을 표시하고, 대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명은 법인의 명칭과 대표인 사실을 표시하고 대표 자신의 성명을 자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여 법인의 경우 서명이라고 할 때 반드시 법인의 명칭과 대표인 사실이 표시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사항까지도 자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인의 대표가 서명날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인 사실을 표시하고 대표 자신의 이름을 자서하고 날인하면 됩니다. 이 경우 날인은 법인의 명칭이 새겨진 도장이든 대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든 무방합니다. 이것이 법인 대표의 일반적인 서명날인

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질의 사안의 경우는 관계자 표시란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날인하는 란에는 대표 자신의 이름을 자서하지 않고 법인의 명칭을 자서하고 법인의 명칭이 새겨진 도장을 날인하고 있다는 것인바, 이런 경우에 서명날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건대 이는 결코 통상적인 서명날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정증서의 원본에 서명날인되어 있느냐 아니냐는 단지 어느 한 부분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증서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관계자 표시 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인 사실과 그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법인의 명칭을 자서한 것은 서명날인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모습의 법인 대표의 서명날인은 아니므로 궁극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 질의 3. (2)에 대한 답변

위 (1)의 답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5. 질의 3. (3)에 대한 답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 (2)의 경우는 그 서명날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지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단 공증인으로서는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6. 질의 4.에 대한 답변

가능합니다. 다만, 어음채권은 어음에 표창되어 있으므로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 양수한 양수인이라도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려면 어음 원본이 첨부된 공정증서 정본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협회 주요 활동

1 공증연계를 통한 형사조정 활성화 방안에 관한 협회 의견 제시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에서 마련한 2014. 1. '형사조정 활성화 종합 대책'의 시행으로 형사조정이 성립될 경우 합의사항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증 연계를 통해 집행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① 관할 지역 내 공증인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증인과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여 형사 조정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들이 그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제1안), ②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그 관할 구역의 '검사'를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안(제2안), ③ 청의 인력 상황, 공증인 사정 등을 고려, 청에서 제1안이나 제2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제3안) 마련과 관련하여,

우리 협회는 관내 공증인들의 신청을 받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당사자들을 그 공증사무소로 안내하여 공증을 받도록 하는 제1안이 가장 타당한 방안이며, 다만 이 경우 다수의 공증인이 업무협약체결을 희망할 때는 적정하게 공증사건이 안분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덧붙여 협회에서는 형사조정의 결과를 공증할 때 피해자가 공증수수료를 부담하는 일도 종종 있는바, 그 후 가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피해 회복에 공증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경우 결과적으로 공증에 대한 부정적 인상만 심어주게 될 우려가 발생하고, 이는 형사조정 제도는 물론 공증제도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 범죄피해자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경우라면 국가가 그를 위하여 공증인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차제에 대한공증인협회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으로 등록하도록 하고(범죄피해자보호법 제33조), 협회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피해자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서 범죄피해자를 대신하여, 공증을 처리한 해당 공증인에게 공증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면 협회는 공익적 차원에서 동 제도 시행에 적극 협력할 것임을 강조함.

다음은 협회가 2014. 3. 12. 법무부에 제시했던 공증연계를 통한 형사조정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의견으로서, 협회의 주요 회무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원문을 게재함.

⊙ 협회 의견서 원문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에서 마련한 2014년 1월 '형사조정 활성화 종합 대

책' 의 시행으로 형사조정이 성립될 경우 합의사항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증 연계를 통해 집행력을 확보함에 있어서 현재 검토 중인 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대한공증인협회의 의견을 개진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검토 방안의 요지

자료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형사조정과 관련하여 공증 연계를 통해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 제1안으로는 관할 지역 내 공증인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증인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형사 조정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들이 그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 제2안으로는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그 관할 구역의 '검사'를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안을,
○ 제3안으로는 청의 인력 상황, 공증인 사정 등을 고려, 청에서 제1안이나 제2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각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2. 검토 방안에 대한 의견

설명의 편의상 제2안, 제1안, 제3안의 순서로 검토하겠습니다.

가. 제2안에 대한 검토

제2안은 공증인법 제8조 및 제10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1) 먼저 공증인법 제8조는 공증인법 제정 이래 두 번에 걸쳐 개정되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증인법 제정 당시 규정〉

> 제8조 (공증사무의 대행)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내에 공증인이 없는 경우 또는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검사 또는 지방법원등 기소장인 법원서기로 하여금 관할구역내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1981년 개정에 따른 규정〉

> 제8조 (공증사무의 대행)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내에 공증인이 없는 경우 또는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검사 또는 지방법원등 기소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내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2009년 개정에 따른 규정>

제8조 (공증사무의 대행) 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 공증인이 없거나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의 검사나 등기소장에게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 개정 전에는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 공증인이 없거나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나 등기소장으로 하여금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9년 개정으로 위 경우 외에도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나 등기소장으로 하여금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증인법 제8조의 요건을 개정한 취지는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하면 공증인이 없거나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관할을 세분하여 지청 관할 구역이나 그 밖의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 공증인이 없거나 공증인이 있지만 어떠한 사정으로 그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주민들에게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 관할 구역 안의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청의 검사나 등기소장으로 하여금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2) 한편 공증인법 제10조에 의하면 공증인은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되어 있고 소속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마다 공증인의 정원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는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에서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① 공증인은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한다.
② 각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定員)은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마다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역을 세분하여 정원을 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공증인의 소속과 관할을

정하면서 그 관할구역 내 공증인의 정원을 법률로 엄격히 정하고 있는 취지는 기존 공증사무소의 업무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 관할구역 내의 공증사무소의 운영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공증의 신뢰를 제고함에 있습니다.

(3) 위와 같이 공증인법 제8조와 제10조의 취지를 살펴 볼 때 법무부장관이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검사나 등기소장으로 하여금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도 공증인의 정원제를 도입한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관내 공증사무소 사정을 따지지 아니하고 전국의 모든 지방검찰청이나 지청마다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검사를 두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사료됩니다.

(4) 또한 집행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증서에 관해서 필연적으로 열람이나 정·등본의 교부뿐만 아니라 집행문의 부여나 승계집행문의 부여 등의 사무가 뒤따르고, 이는 이의신청이나 이의의 소의 대상이 되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도 검사로 하여금 공증을 하도록 하는 제2안의 채택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제1안에 대한 검토

관내 공증인들의 신청을 받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당사자들을 그 공증사무소로 안내하여 공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일응 타당한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 경우 다수의 공증인이 업무협약체결을 희망할 때는 적정하게 공증사건이 안분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공증사무소마다 순번을 정하여 1달이나 1주일 혹은 하루씩 공증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일부 공증사무소에 공증사건이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 제3안에 대한 검토

청의 사정에 따라 제2안을 선택한다고 할 때에는 앞서 제2안에서와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관내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공증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2안을 선택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3. 공증연계를 통한 형사조정 활성화 방안에 관한 협회의 보충 의견

형사조정의 결과를 공증할 때 피해자가 공증수수료를 부담하는 일도 종종 있는바, 그 후 가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피해 회복에 공증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경우 결과적으로 공증에 대한 부정

적 인상만 심어 주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형사조정 제도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공증제도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범죄피해자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경우라면 국가가 그를 위하여 공증수수료를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한공증인협회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으로 등록하도록 하고(범죄피해자보호법 제33조)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지위에 있는 대한공증인협회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피해자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서 범죄피해자를 대신하여, 공증을 처리한 해당 공증인에게 공증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일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다면, 대한공증인협회에서도 공익적 차원에서 동 제도의 시행에 적극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견서 원문 끝>

❷ 상법상 주주총회 서면결의 등기시에도 공증인의 인증받은 의사록 첨부 요청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되면서, 서면결의를 한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법인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은 서면결의서나 서면동의서를 첨부하여도 이를 수리하는 등기실무 사례와 관련하여, 등기법상 등기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 등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의사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서면결의에 의한 주주총회 의결 갈음의 경우라도 등기 시에는 종전과 같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해야 된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협회는 2014. 5. 22. 법원행정처에 공식적으로 위와 같은 등기 사례는 상법, 상업등기법 및 공증인법 취지에 맞지 않는 실무라고 여겨지므로, 일선 등기관서에서 위와 같은 등기사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하여 줄 것을 요청함.

이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에서는 기존 실무를 변경할 경우 많은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협회와 법무부 차원에서 공증인법을 개정하여 위와 같은 실무가 변경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으며, 향후 협회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❸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 시행에 대한 회원 여론 수렴 자료 법무부 전달

대부업자 등에 의한 집단적인 집행증서 작성 촉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 · 시행 중인 집행증서 작성사무지침과 관련하여, 회원 의견이 지침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행대로 시행하여 줄 것을 지지하는 의

견으로 나뉘었는바, 이들 의견을 모두 법무부에 2014. 6. 26. 자로 전달하면서, 협회 상임이사회에서는 대부업자 등에 의해 쌍방대리나 자기계약 방식으로 촉탁이 있는 경우 공증인에게 촉탁을 거절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위 지침 제4조는 공증인법상 명문 규정으로 입법화할 사항이지 법무부 내규인 지침으로 규정할 사항은 아니다 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음을 함께 전달하였음.

4 공증감사 시 촉탁대리인이 법무사인 경우 비대면 공증 지적사례 협조요청

최근 협회에 접수된 모 회원사무소의 고충에 의하면, 그 동안 상당수 공증사무소에서 법무사로부터 의사록 인증을 촉탁받을 때, 위임장에 수임인(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공증인과 면식 있는 법무사가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접 촉탁한 것으로 인증 사무를 처리하여 온 것에 관하여 법무부가 공증감사에서 이를 비대면 공증으로 적발함으로써 중징계될 예정에 있는데, 이는 과거 십수 년 간 이전의 검열에서는 이같은 사안을 비대면 공증으로 적발하는 일이 거의 없었던 사안이므로, 징계에 앞서 공증인들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지 않도록 충분한 계도가 우선 필요하고, 계도 전에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하여는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2014. 7. 31. 법무부에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대하여 협회는, 법무사 사무소라 하더라도 법인등기와 관련하여 의사록 인증을 촉탁할 때 위임장에 수임인(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 촉탁하는 것이 아니라면, 비대면 공증에 해당함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회원에게 알리는 한편, 법무부에는 종전 실무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위 회원의 고충은 현실적, 실무상 어려움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의사록 인증 과정의 비대면 공증에 대하여 징계에 앞서 충분한 계도에 힘써 주고, 계도 전 적발 사례는 선처를 요청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5 후견계약 공정증서 서식 및 실무 안내

기존의 금치산 · 한정치산 제도를 현재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은 물론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상황에 대비하여 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재산 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로 확대 · 개편되어 2013. 7. 1.부터 시행 중인 민법상 후견계약과 관련, 후견계약은 반드시 공증인 작성의 공정증서에 의하여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바, 협회는 법무부와 공증제도개선 T/F를 통하여 후견계약 공정증서 서식을 새롭

게 마련하고 그에 따른 실무를 최종 확정하여, 2014. 8. 26.자로 각 회원에게 안내함.

6 「상업등기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 제시

법원행정처가 입법예고한 「상업등기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중 공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합명회사의 대표사원 등이 취임승낙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공증인의 공증서면을 첨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규정을 상법상 회사 외에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 모든 법인에 준용하도록 하며, 본국과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서면 외에 체류국의 공증인의 공증서면도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인감신고 또는 개인신고를 하는 경우에 인감증명 외에 공증인의 공증서면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협회는, 인감증명청에 신고된 인감이나 등기소에 신고된 인감의 날인을 요구하는 취지는 신고서의 진정성립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확인한 사서증서의 인증에 대하여도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므로 그 취지에 전적으로 찬성하며 다만, 신고서에 공증서면을 첨부한다는 표현은 신고서와 공증서면이 전혀 별개의 서면인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없도록 그 신고서에 대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명확한 문구로 수정하자는 취지의 골자로 검토 의견을 제출하는 한편,

동 규칙에 따르면 제출되는 일정 서면의 경우 제출자가 작성한 서면임을 증명시키기 위해 그 서면에 인감증명법에 의해 신고된 인감이나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을 날인하도록 규정한 경우가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바, 서면의 진정성립은 일반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에 의해서도 인정되므로, 개정안의 경우와 같이 일부 규정에 한정하여 인감증명 대신 공증인의 공증서면을 첨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기 보다는 보칙의 장에서 이에 관한 일반 조항을 신설, “이 규칙에서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한 서면을 제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나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을 날인한 서면을 제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음은 협회가 2014. 9. 11. 법원행정처에 제시했던 「상업등기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으로서, 협회의 주요 입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원문을 게재함.

⊙ 협회의견서 원문

「상업등기법」의 개정에 따른 「상업등기규칙」 전부개정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 협회의 의견을 개진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규정에 관한 검토 의견

가.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제한과 관련하여

(1) 관련 규정

> 제31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 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종류를 명시하고, 등기기록의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기록하며, 발급연월일과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을 적은 후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사항증명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신청인이 지점 또는 지배인에 관한 증명을 따로 청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등기신청이 접수된 등기기록에 관하여는 등기관이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

(2) 검토 의견

개정안 제31조 제3항에 의하면 등기신청이 접수된 등기기록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단서로 그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고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표시한다고 해도 제대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악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단서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굳이 필요하다면 등기 전후로 변동이 없는 사항에 한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나. 신고한 인감 날인 등에 대신한 공증서면의 첨부와 관련하여

(1) 관련 규정

제35조(인감의 제출) ① 인감 또는 개인감(改印鑑)을 제출하는 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은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적고 사용할 인감을 날인한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改印)신고서를 관할 등기소에 출석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등기소에 제출하는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거나 등기소에 제출한 유효한 종전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서에 법 제16조 및 제25조에 따라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할 사람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공증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배인이 제출하는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제2항의 방법 대신 영업주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고 지배인의 인감임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인감은 대조에 적당하고 가로·세로 2.4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가로·세로 1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⑤ 인감신고 또는 개인신고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5조 제2항 단서는 인감카드의 폐지신고와 인감카드사건신고의 경우에 준용됨(제38조제3항, 제39조제6항).

(2) 검토 의견

① 개정안 제35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등기소에 제출하는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거나 등기소에 제출한 유효한 종전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항 단서에 의하면, 그 신고서에 법 제16조 및 제25조에 따라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할 사람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공증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된 인감의 날인 및 그 인감증명의 제출이나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의 날인이 없어도 그 신고서에 대하여 공증

인의 인증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감증명청에 신고된 인감이나 등기소에 신고된 인감의 날인을 요구하는 취지는 신고서의 진정성립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확인한 사서증서의 인증에 대하여도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므로 그 취지에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신고서에 공증서면을 첨부한다는 표현은 신고서와 공증서면이 전혀 별개의 서면인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수정한 단서 규정의 표현

> 다만, 그 신고서에 대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정안 제35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배인이 제출하는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제2항의 방법 대신 영업주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고 지배인의 인감임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영업주의 보증서면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주의 보증서면이라고 해서 제2항과 달리 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제2항 단서 규정의 취지를 그대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35조 제3항을 제1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2문을 아래와 같이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설할 제2문

> 이 경우 영업주의 보증서면에 대하여는 제2항의 단서를 준용한다.

다. 전자확정일자의 정보제공 요청과 관련하여

(1) 관련 규정

> 제44조(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
> ① 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하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 이라 한다]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할 수 있다.
> ② 전자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인감제출자의 성명, 자격,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기록한다)
2. 회사의 상호와 법인등록번호
3. 전자증명서의 증명기간, 일련번호, 전자서명검증정보
4. 전자서명의 방식
5.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3호의 증명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전자신청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전자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등기신청
2. 전자공탁
3. 전자확정일자 정보제공 요청
4.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용도

(2) 검토 의견

개정안 제44조 제5항 제3호는 전자증명서의 용도로 '전자확정일자 정보제공 요청'을 열거하고 있는바, 여기서 '전자확정일자'라는 용어는 마치 일반 확정일자와 다른 새로운 제도로서 전자확정일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적절한 용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원래 이 용어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의 전자확정일자부에서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자확정일자부는 확정일자부가 전자적 형태의 기록으로 작성된다는 의미에서 확정일자부에 전자를 붙여 전자확정일자부라고 명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개정안 제44조 제5항 제3호는 이와 같은 오해 소지가 있는 '전자확정일자 정보제공 요청'이라고 규정하는 대신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른 확정일자 정보제공 요청' 혹은 '전자확정일자부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정보제공 요청'이라고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라. 취임승낙 등을 증명하는 서면과 관련하여

(1) 관련 규정

제104조(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 ① 대표사원, 청산인,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

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공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중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에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제104조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으로서 합자조합의 등기(제96조 제2항), 합자회사의 등기(제127조 제2항), 주식회사의 등기(제154조의 제2항), 유한회사의 등기(제162조 제1항) 등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음.

(2) 검토 의견

① 개정안 제104조 제1항의 본문 규정 중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공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전술한 바와 같이 다소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함이 타당합니다.

변경한 본문 규정

대표사원, 청산인,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거나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개정안 제104조 제2항은 제1항의 서면을 외국인이 작성한 경우에 관한 특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작성한 사서증서에 대하여 외국의 공증인이 인증한 경우 국내에서는 그 공증인이 실재하는지 더 나아가 그 서명이나 직인이 공증인의 서명이나 직인이 맞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재외공관공증법에서 영사관의 주재국 발행 공문서 확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동법 제30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이와 같은 절차는 번거롭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각국은 이를 간소화시키기 위하여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영사관의 확인을

면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위 협약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송절차에서는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 대하여는 우리의 공문서에 준하여 취급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56조 제3항).

이는 보통 소송절차가 단기나 1회의 절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어서 만일 그것이 잘못된 문서라면 상대방에 의해서 충분히 밝혀질 수 있고, 특히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소송절차에서 법원이 외국의 공공기관에 조회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 대하여 우리의 공문서에 준하여 취급하여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사소송절차에서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충분히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등기절차는 소송절차와 달리 1회적이고 즉시적일 뿐만 아니라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이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술한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의 발급을 면제하는 것으로 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업등기가 법인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그러한 확인절차는 오히려 더욱 엄격히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1항의 인감증명이나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증명서면을 외국인이 작성한 경우 이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위 개정안 제104조 제3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04조 제3항

> 제2항의 경우 첨부되는 외국의 인감증명이나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은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가입국인 경우에는 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협회의 제언

「상업등기규칙」에 따르면 제출되는 일정한 서면의 경우 제출자가 작성한 서면임을 증명시키기 위해서 그 서면에 인감증명법에 의해서 신고된 인감이나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을 날인하도록 정한 경우가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바, 그 취지는 그 서면의 진정성립을 인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면의 진정성립은

일반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에 의해서도 인정됩니다. 개정안의 제35조 제2항 단서(이를 준용하는 경우 포함)나 제104조 제1항 후문(이를 준용하는 경우 포함)은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와 같이 명문 규정을 둔 경우에 한해서 인정할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서면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이 필요하여 신고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한 경우나 제출된 인감을 날인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에 관해서는 「상업등기규칙」 해당 조항에서 이를 일일이 정하기보다 보칙의 장에서 이에 관하여 일반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이 경우 조문의 위치는 「상업등기규칙」 제7장 보칙 맨 앞이 적당하므로 개정안의 제174조부터 제179조는 제175조부터 제180조로 하고 이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제174조로 하면 될 것입니다.

> 제174조(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 이 규칙에서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한 서면을 제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나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을 날인한 서면을 제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상업등기규칙」 전부개정안에 관하여 대한공증인협회의 의견을 개진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원문 끝>

7 「상업등기규칙」 관련 각종 제정예규안 등에 대한 의견 제시

협회는 상기 「상업등기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와 더불어 「상업등기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법원행정처가 입안한 「상업등기규칙」 관련 각종 제정예규안 등에 대하여도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다음은 협회가 2014. 10. 14. 법원행정처에 제시했던 의견으로서, 협회의 주요 입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원문을 게재함.

⊙ 협회 의견서 원문

「상업등기법」 전부개정법률 및 「상업등기규칙」 전부개정규칙에 따른 후속조치로 새롭게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중인 「상업등기규칙」 관련 제정예규안 등에 대하여 대한공증인협회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가. 「상업등기법」 전부개정법률 및 「상업등기규칙」 전부개정규칙에 따른 제·개정 대법원등기예규안 중 공증사무와 관련한 부분에 관하여 우리 협회가 이미 「상업등기규칙」 전부개

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조회 때 밝힌 바와 같이, 각종 예규에서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으로 정하고 있는 것 중에서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과 별도로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따로 분리하여 정하는 것은 두 서면이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나. 「상업등기규칙」이나 대법원예규안에서 정하고 있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의 의미를 그 서면에 대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할지라도 대법원예규안 규정 중 공증사무와 관련된 규정들 상호간에 서로 조금씩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것은 서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식회사의 이사 등에 관한 등기신청 및 등기관의 업무처리지침 예규안」 제5조(대표이사의 선임등기 등)에서는 대표이사의 선임등기 등에 관하여 첨부서면으로 1. 이사회의사록 내지 주주총회의사록, 2.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 또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8조에서는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의 선임등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첨부할 서면으로 1. 집행임원 등의 선임 · 임기 등을 규정한 정관, 2. 선임을 증명하는 이사회의사록과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 두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비교하면 집행임원 등의 경우에는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표이사의 선임등기의 경우에서처럼 '인감증명 또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임원 등의 경우에 대표이사의 경우와 달리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이라고 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서로 일치시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8조를 이와 같이 규정한다면 제3호를 신설하고 제2호는 '선임을 증명하는 이사회의사록'으로 하며 제3호는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 또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주식회사의 해산 및 청산인선임 등기신청 및 등기관의 업무처리지침 예규안」 제6조에서는 청산인선임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으로 제2호의 '청산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제3호의 '취임승낙서'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대표이사의 선임등기의 경우와 같은 의미이므로 그 역시 동일하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즉, 제2호는 '정관으로 청산인을 정

한 경우에는 정관과 청산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으로 제3호는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의사록(또는 주주총회 및 청산인회의사록)과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및 인감증명 또는 공증인의 인증서면' 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과 같이 「상업등기법」 전부개정법률 및 「상업등기규칙」 전부개정규칙에 따른 후속조치로 새롭게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중인 「상업등기규칙」 관련 제정예규안 등에 대한 우리 협회의 의견을 개진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원문 끝>

8 제8회 공증주간 설정 및 공증인 보조자 교육 시행

협회는 법무부와 공동 주최로, 공증제도가 사인 간 거래 시 증거 남기는 문화를 확산시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예방하며, 약속이 지켜지는 신뢰사회 조성을 위한 법질서 바로 세우기의 중요한 수단임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기 위하여 9. 22.(월)~26.(금)까지를 "제8회 공증주간"으로 설정, 홍보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 · 배포, 협회장의 한국정책방송(KTV) <생방송 국민행복시대> 집중인터뷰 출연 등 대국민 홍보를 시행함.

또한 제8회 공증주간을 기념하고 공증인법 제77조의8(회원 연수 등) 규정에 따라 공증인 보조자의 직무수행 능력 제고와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2014년도 공증인 보조자 교육"을 9. 22.(화) 14:00~18:00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층 대강당에서, ① 최근 공증법령 개정 내용 설명, ② 각종 질의회신에 대한 설명, ③ 전자공증시스템 사용방법, ④ 공증감사 지적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고, 동 교육에 전국 총 263개 회원 사무소의 공증인 보조자 267명(각 사무소별 1명. 단, 4개소는 2명 참석)이 참석했음.

9 제8회 공증주간 기념 공증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회원 간담회 개최

제8회 공증주간을 기념하여, 9. 25. 협회 집행부 임원과 법무부 법무실장 등 공증실무자 및 회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증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회원 간담회"를 개최, 공증의 신뢰제고 및 공증제도 활성화 방안을 비롯한 협회와 법무부에 바라는 사항을 중심으로 참석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회는 간담회 후속 방안으로 대국민 공증업무 신뢰 회복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고 회칙 범위 내에서 회원 및 일반인의 공증업무 관련 위법사항에 대하여 조사 및 위법 사실 확인 시 관계기관에 징계건의, 고발 업무 등을 담당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

⑩ 인가공증인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인가 신청 안내

법률 제9416호(2009. 2. 6.) 개정 공증인법 제15조의8(인가의 유효기간) 등의 규정에 따라 전국 모든 인가공증인(단, 2012년 신규 인가 회원 1곳 제외)의 인가 유효기간 기산일이 2010. 2. 7. 시작되어 유효기간 5년이 지나게 되는 2015. 2. 6.자로 종기되는바, 협회는 법무부로터 재인가 신청과 관련한 신청서 등 구체적 내용에 관한 실무를 요청, 각 인가공증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공증인법시행령 제34조(재임명 및 재인가)에 따라 효력 종기일 3개월 전인 2014. 11. 6.까지 재인가 신청을 하도록 2014. 8. 26. 및 2014. 9. 16. 2회에 걸쳐 각 회원에게 안내함.

⑪ 징계전력자의 공증인 임명 등 제한 기준 법무부 지침 관련 회원 진정 검토

법무부의 "징계전력자의 공증인 임명 등 제한 기준" 제5-5조에서 공증인의 재임명, 재인가 제한 사유로 정하고 있는 "임기 만료 직전 5년 동안 공증인법에 의하여 과태료 2회 이상 또는 정직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는 등 직무수행의 태도, 방식, 결과 등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규정과 관련하여 일부 회원으로부터, 징계의 종류도 다양한데 과태료 징계 2회를 이유로 재임명, 재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방화벽 시설 등 공증사무소 설치에 지출한 많은 비용을 보전 받지도 못한 채 폐쇄해야 되고, 특히 생계형 공증실의 경우 전혀 구제대책이 없게 되고, 보조자들은 직장을 잃게 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취지의 진정을 협회에 제기한 데 대하여,

협회는,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및 행위시법 적용 원칙에 비추어 공증인법 제정 이후 최초로 진행 중인 인가공증인 재인가 심사에 따른 재인가 제한 사유 반영 시점은 이번에 한하여 동 지침이 시행된 2013. 10. 1. 이후 실시된 공증사무 검열 등을 통한 징계사유 적발로 징계위원회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 국한되어야 하며, 공증인이 과태료 2회 이상 또는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직무수행의 태도 등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만큼 재인가 심사 시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향후 개전의 가능성이 충분한지 여부, 과태료 등의 징계처분 당시 징계사유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법무부가 면밀히 검토하여 재인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점을 법무부에 공식 전달함.

다음은 협회가 2014. 12. 1. 법무부에 제시했던 인가공증인 재인가 심사 시 "징계전력자의 공증인 임명 등 제한 기준" 지침 적용 관련 협회 의견으로서, 협

회의 주요 회무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원문을 게재함.

⊙ 협회 의견서 원문

1. 지침 제5-5조 재인가 제한 사유 관련

○ "징계전력자의 공증인 임명 등 제한 기준" 제5-6조(재인가의 제한)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5-5조(재임명의 제한) 제1호는 "임기 만료 직전 5년 동안 공증인법에 의하여 과태료 2회 이상 또는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는 등 직무수행의 태도, 방식, 결과 등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증인이 과태료 2회 이상 또는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직무수행의 태도 등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징계 실무상 비록 2회 이상 과태료 징계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경미하여 과태료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있는 반면, 단 1회의 과태료 징계처분을 받더라도 과태료 최고 금액인 1천만 원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 귀부에서 횟수를 엄격하게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재인가 심사 결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동 지침 제5-7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해당 회원에게는 재인가 심사 시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향후 개전의 가능성이 충분한지 여부, 과태료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직무수행의 태도, 방식, 결과 등이 진정 현저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동 지침 제5-5조 본문의 경우에서도 위와 같은 사유 등이 있다 하더라도 인가공증인으로서의 적절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인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의 의미는 과태료 2회 이상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신뢰를 회복하여 앞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재인가 하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2. 지침 부칙 시행일 관련 관련

○ 2009년 공증인법 개정 이전에는 인가공증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므로 자발적인 인가취소 또는 징계에 의한 인가취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기간에 관한 아무런 제약 없이 공증인 업무를 해 왔었습니다. 개정 공증인법이 시행된 2010. 2. 7.부터는 5년이라는 유효기

간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인가공증인들의 경우 동 지침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향후 징계사실이 바로 재인가와 연관지어 질 것으로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이 실정이었습니다.

○ 한편, 동 지침 부칙에서는 그 시행일과 관련하여 "2013. 10. 1.부터 시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및 행위시법 적용 원칙에 비추어보면, 공증인법 제정 이후 최초로 진행중인 인가공증인 재인가 심사에 따른 재인가 제한 사유 반영 시점은 동 지침이 시행된 2013. 10. 1. 이후 실시된 공증사무 검열 등을 통한 징계사유 적발로 징계위원회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 국한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인가공증인 재인가 심사 시에 귀 부에서는 위와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재인가 제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원문 끝〉

⓬ 2014년도 『공증과신뢰(구, 대한공증협회지』 (통권 제7호) 발간

협회 기관지 『공증과신뢰』 2014년도 통권 제7호 시론으로 "유언 공증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특집에 법무부 공증사무 지침의 내용 및 공증신뢰 회복을 위한 향후과제(법무부 박혁수 검사) △ 후견계약에 관한 연구(박상진 공증인)를, 논단으로 △ 서면결의 및 간주서면에 관한 고찰(남상우 법제이사)을, 단상에 △ 웰-다잉의 시대/사전의료지시에 대한 공증에 관한 소론(법무법인 한미 김철기 변호사) 등의 논문과 함께 UINL 활동 보고서, 유권해석, 주요 회무 등을 게재, 2014. 4. 총 1,100부를 발간, 회원 및 법원 · 검찰 · 변호사회 · 국공립도서관 · 유관기관 등에 배포함.

⓭ 국제공증인협회 회원국 활동

① 중국 주최 2014년도 국제공증인협회 아시아지역위원회 정기회의 참석

2014. 9. 2.(화)~4.(목)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공증인협회 주최로 개최된 2014년도 국제공증인협회(UINL) 아시아지역위원회(CAAs) 정기회의에 유원규 협회장 등 임원 5명이 협회 대표로 참석, UINL 회장단과 일본, 중국, 몽골, 베트남 및 옵서버로 태국 등 참가자들과 함께 공증인의 의무 및 전자공증제도 등에 관한 토론을 진행함.

② 태국 법무부 주최 '태국 공증인법 제정' 국제회의 참석

태국 법무부가 "태국에서의 사업 용이성을 위한 공증제도 활성화 및

공증인법 제정"을 위해 주최한 각종 국제회의에 김주덕 · 김종환 · 안원모 부협회장 등이 순차 참석, 한국 공증제도의 현황과 법령, 최근 새로 도입된 공증제도 등에 대하여 발표하는 협회 위상을 드높임.

14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리뉴얼 (SNS에 최적화된 워드프레스 형태)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notary.or.kr)를 지난 12월 중순 리뉴얼을 완료함.

2014년도 협회 주요 회무 일지 (2014. 1. 1. ~ 12. 31.)

○ 2014. 1. 23. : 공증인징계위원회 예비위원 추천 / 법무부

○ 2014. 1. 20. : 제1차 상임이사회 개최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공증대행'을 키워드로 하는 광고의 위법 여부 법무부 유권해석 검토 ② 2014년도 사업계획(안) 검토 ③ 2013년도 일반회계 · 기금특별회계 결산서 및 2014년도 일반회계 · 기금특별회계 예산(안) 논의 ④ 2014년도 대의원 정기총회 개최(안) 승인 및 임원 등 선출절차 논의 ⑤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안) 논의 ⑥ 2014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 및 제1차 이사회 개최 논의

○ 2014. 3. 3. : 제1차 이사회 겸 제2차 상임이사회 개최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2014년도 사업계획 승인(원안 의결) ②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결산 승인(원안 의결) ③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예산 승인(원안 의결) ④ 2014년도 대의원 정기총회 개최 승인 및 임원 등 선임절차 승인(원안 의결) ⑤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동의(원안 의결) ⑥ 공증연계를 통한 형사조

정 활성화 검토 방안 논의(위임 의결)

○ 2014. 3. 12. : 공증연계를 통한 형사조정 활성화 방안에 관한 협회 의견 제시 / 법무부

○ 2014. 3. 17. :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논의 및 의결사항 : 2014년도 정기총회 개최 및 협회장 선출 등 의안에 관한 권고(자문)

○ 2014. 3. 31. : 2014년도 대의원 정기총회 개최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결산 승인(원안 의결) ②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예산 승(원안 의결) ③ 총회 대의원 선출(원안 의결) ④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원안 의결) ⑤ 임원 중 감사 선출(원안 의결) ⑥ 임원 중 협회장 선출(총회 대안 의결) ⑦ 임원 중 부협회장, 상임이사, 이사 선임 승인권 운영위원회에 위임(총회 대안 의결)

▶신임 협회장

(임기 : 2016년도 정기총회일까지)

□ 유 원 규 [법무법인 광장]

▶신임 감사

(임기 : 2016년도 정기총회일까지)

□ 최 중 현 [법무법인 효원]

□ 유 정 주 [공증인서부합동사무소]

▶신임 운영위원

(임기 : 2016년도 정기총회일까지)

□ 고 영 준 [제일종합 법무법인]

□ 문 영 길 [법무법인 동일]

□ 노 승 행 [법무법인 두레]

□ 유 경 희 [법무법인 광장]

□ 송 정 호 [법무법인 한중]

□ 강 수 림 [성심종합 법무법인]

□ 김 진 환 [법무법인 충정]

▶신임 총회 대의원 명단(총 79개소)

(임기 : 2016년도 정기총회일까지)

• 서울중앙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24**개소)

공증인 김형민
공증인 장희목
공증인가 경향합동 법률사무소
공증인가 소공합동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경원
광화문 법무법인
법무법인 대종
동방종합 법무법인
법무법인 두레
법무법인 로투스
법무법인 봄
법무법인 새한양
법무법인 서울제일
법무법인 세창
법무법인 아시아
법무법인 우원
법무법인 충정
법무법인 태안
법무법인 하나
법무법인 한강
법무법인 한길
법무법인(유한) 한별
법무법인 한중
법무법인 호민

• 서울동부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3**개소)

공증인 신문식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법무법인 하나로

• 서울남부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4개소)
법무법인 강서
남부종합 법무법인
법무법인 다우
법무법인 안민

• 서울북부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2개소)
법무법인 북부합동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자유

• 서울서부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2개소)
공증인 심일동(공증인서부합동사무소)
공증인가 고려합동 법률사무소

• 의정부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3개소)
공증인 이병렬
법무법인 정언
법무법인 통일

• 인천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4개소)
공증인가 주안합동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명인
법무법인 부일
법무법인 해동

• 수원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9개소)
공증인 김병남
공증인 김재수
경희 법무법인
법무법인 공평종합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누리
법무법인 대현
동수원종합 법무법인
법무법인 우진
평택 법무법인

• 춘천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2개소)
공증인 박우순
법무법인 율곡

• 청주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2개소)
대원종합 법무법인
법무법인 청주로

• 대전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3개소)
법무법인 대전제일 법률사무소
서도 법무법인
법무법인 홍주

• 대구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5개소)
공증인가 대구고려합동 법률사무소
공증인가 팔공합동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가야종합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구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법률사무소

• 부산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4개소)
법무법인 구덕
법무법인 부산동부
법무법인 신성
법무법인 우리들

• 울산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2개소)
공증인 서보석
법무법인 원율

• 창원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3개소)
공증인 강처목
공증인 석진국
경남 법무법인

• 광주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4개소)
공증인가 광주제일합동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주로폄
법무법인 법가
법무법인 서석

• 전주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2개소)
공증인가 전주합동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백제

• 제주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1개소)
법무법인 해오름

○ 2014. 4. 15. :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임원 중 부협회장, 상임이사, 이사 선임 승인(원안 의결) ② 집행증서 작성 사무 지침 등에 대한 회원 의견 검토 및 자문 ③ 회무 추진 예정사항 보고

▶신임 부협회장, 상임이사, 이사 명단 (임기 : 2016년도 정기총회일까지)

□ 부협회장

김 주 덕 [법무법인 태일] (수석)
김 종 환 [대전종합법무법인]
안 원 모 [법무법인 한덕]
이 상 석 [공증인 이상석 사무소]

□ 상임이사

총무이사
안 원 모 [법무법인 한덕] (겸임)
국제이사
박 광 빈 [법무법인(유한) 율촌]
회원이사
김 영 철 [법무법인 정세]
기획이사
김 건 수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법제이사
남 상 우 [안산제일 공증인 합동사무소]
재무이사
이 봉 상 [법무법인(유한) 화우]

□ 이 사

이 금 원 [광주 공증인 합동사무소]
김 양 남 [공증인가 여의도합동법률사무소]
백 수 일 [영남 법무법인]
이 흥 복 [서정 법무법인]
현 영 두 [공증인 현영두 사무소]
이 태 운 [법무법인(유한) 원]
김 태 우 [법무법인 국제]
홍 경 호 [모란법무법인]
여 상 조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김 수 민 [법무법인(유한) 영진]
김 영 곤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이 경 우 [법무법인(유한) 한결]
박 기 웅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박 형 연 [법무법인 코러스]
한 정 화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김 철 기 [법무법인 한미]

○ 2014. 5. 12. : 제3차 상임이사회 개최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법원행정처에 상법상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 의결 갈음의 경우에도 등기시 별도 인증 의사록 첨부 협조요청 논의 ② 집행증서 작성 사무 지침 등에 대한 회원 의견 및 협회 측 대안 검토 ③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공정증서 경정 방법 관련 질의 회신 검토 ④ 2014년도 공증과신뢰 통권 제7호 집필자 원고료 책정 논의 ⑤ 법무부와의 공증제도개선 T/F 구성 보고 ⑥ 태국 법무부 주최 사법엑스포 참여 ⑦ 취임 인사차 법원행정처 예방 추진 ⑧ 협회 존재감 고양 방안 검토

○ 2014. 5. 15. : 2013년도 「공증과신뢰」 통권 제7호 제공 및 기증 등 납본 / 회원 및 법원, 검찰, 국공립중앙도서관, 유관기관 등

○ 2014. 5. 15. : 질의(유언공정증서 경정 방법 관련) 회신 / 변호사 ○○○

○ 2014. 5. 22. : 서면결의 시 공증인의 인증받

은 의사록 첨부 요청 / 법원행정처

○ 2014. 6. 23. : 제4차 상임이사회 개최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 등에 대한 회원 의견 반영 협회 측 의견 제검토 ② 인도집행증서 및 후견계약공정증서의 유명무실 관련 법률신문 기사에 대한 제반사항 검토 ③ 제8회 공증주간 개최에 따른 예산, 행사범위 등 제반사항 논의 ④ 중국공증인협회 주최 UINL 2014년도 CAAs 참석 관련 제반 논의 ⑤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시 예산 전용 및 콘텐츠 범위 등 논의 ⑥ 사무국 직원 채용 검토

○ 2014. 6. 26. : 2014년도 연회비 및 과년도 미납 연회비 납부 안내 / 회원

○ 2014. 6. 26. :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 시행에 대한 회원 여론 수렴 자료 송부 / 법무부

○ 2014. 7. 2. : 인가공증인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인가 신청시 필요 서류 등 문의 / 법무부

○ 2014. 7. 21. : 제5차 상임이사회 개최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공증업무 질의(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 인증 시 수수료 산정 기준 및 법무사가 촉탁인인 경우 비대면공증 사례 관련) 회신(안) 논의 ② 제8회 공증주간 개최에 따른 예산, 행사범위 등 제반사항 재논의 ③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시 예산 전용 및 콘텐츠 범위 등 재논의 ④ 서면결의에 따른 법인 등기 관련 사무처리 협조 요청에 대한 법원행정처 입장 검토 ⑤ 대법원에서 검토중인 상업등기규칙 전문개정 규칙(안) 검토 ⑥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임대차 현황 인터넷 공개 논의 ⑦ 전문직업 대상책임보험 관련 검토

○ 2014. 7. 31. : 촉탁대리인이 법무사인 경우에 대한 업무지침 하달 요청 관련 협회 의견 회신 / ○○법무법인

○ 2014. 7. 31. : 공증감사에서 촉탁대리인이 법무사인 경우 비대면 공증 지적사례에 대한 협조 요청 / 법무부

○ 2014. 8. 18. : 제6차 상임이사회 개최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공증업무 질의(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 인증시 수수료 산정 기준 및 법무사가 촉탁인인 경우 비대면공증 사례 관련) 회신(안) 재논의 ② 제8회 공증주간 포스터 및 리플릿 시안 확정 및 회원과 집행부 간 오찬 간담회 개최 논의 ③ 중국공증인협회 주최 2014 CAAs 참석 등 국제업무 관련 사항 논의

○ 2014. 8. 26. : 후견계약공정증서 서식 및 실무 안내 / 회원

○ 2014. 8. 26. : 인가공증인 인가 유효기간 만료 예정에 따른 재인가 신청 안내 / 회원

○ 2014. 9. 2. ~ 4. : UINL 2014 CAAs 중국 정기회의 참석 / 협회장, 수석부협회장, 국제이사, 회원이사, 기획이사

○ 2014. 9. 11. : 상업등기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 조회 회신 / 법원행정처

○ 2014. 9. 15. : 제7차 상임이사회 개최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공증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회원 간담회 개최 논의 ② 2014년도 공증인 보조자 연수교육 시행 논의 ③ 협회 대외 홍보용 영문 브로슈어 개정 논의

○ 2014. 9. 16. : 인가공증인 인가 유효기간 만료 예정에 따른 재인가 신청 추가 안내 / 회원

○ 2014. 9. 22. ~ 26. : 제8회 공증주간 설정

○ 2014. 9. 23. : 2014년도 공증인 사무직원 교육 시행 / 전국 265개 회원 사무소 공증인 보조자 267명 참석(2개소는 2명씩 참석)

○ 2014. 9. 25. : 제8회 공증주간 기념 공증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회원과의 오찬 간담회 / 협회 집행부 임원, 법무부 법무실장 등 공증 실무자, 회원 17개소 참석

○ 2014. 10. 14. : 상업등기규칙 관련 제정예규안 등에 대한 의견 조회 회신 / 법원행정처

○ 2014. 10. 20. : 제8차 상임이사회 개최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공증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회원 간담회에서의 의견 개진 사항 검토 ② 공증업무 질의(1인 주주 회사의 대표이사 해임 주주총회 의사록 인증 업무 관련) 회신(안) 논의 ③ 2015년도 공증과신뢰(통권 제8호) 발간 논의

○ 2014. 10. 27. : 2015년도 장부 조제 및 인증 신청 안내 / 회원

○ 2014. 10. 27. : 공증제도 홍보를 위한 미담사례 등 송부 협조 요청 / 회원

○ 2014. 11. 18. : 문서인증등본송부촉탁 관련 회신 / 서울고등법원

○ 2014. 11. 18. : 사실조회 회신 / 수원지방법원

○ 2014. 11. 24. : 제9차 상임이사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공증업무 질의(1인 주주 회사의 대표이사 해임 주주총회 의사록 인증 업무 관련) 회신(안) 재논의 ② 징계전력자의 공증인 임명 등 제한 기준 법무부 지침 시행 관련 회원 진정 논의 ③ 2015년도 실적회비 인상 여부 및 일반회계 퇴직금 항목 기금특별회계로의 변경 논의 ④ 조사위원회 규칙 제정(안) 논의

○ 2014. 12. 1. : 인가공증인 재인가 심사 관련

협회 의견 및 회원 진정서 사본 송부 / 법무부

○ 2014. 12. 30. : 제10차 상임이사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공증업무 질의(1인 주주 회사의 대표이사 해임 주주총회 의사록 인증 업무 관련) 회신(안) 추가 재논의 ② 공증업무 질의(소멸시효가 지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한 집행문 부여 가능 여부 등) 회신(안) 논의 ③ 조사위원회 규정 제정 수정(안) 재논의 ④ 2015년도 실적회비 인상(안) 논의 ⑤ UINL 2014 정기총회 의결 권고사항 논의

2014년도 회원 입회 및 탈회 현황
(2014. 1. 1. ~ 12. 31.)

○ 입회 현황 ○

(공증인 임명 및 공증사무소 설치인가 등)

❖ 공증인 양재환 사무소
- 소속 서울남부지검

· 임명일 : 2014. 1. 20.(임기 5년)
· 사무소 : 서울중앙공증인합동사무소
·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1401호 (여의도동, 신송빌딩) (우) 150-923
· 전 화 : 02-3478-8200
· 팩 스 : 02-3478-5544
· 입회일 : 2014. 1. 20.

❖ 공증인 정성광 사무소
- 소속 서울남부지검

· 임명일 : 2014. 1. 20.(임기 5년)
· 사무소 : 서울중앙공증인합동사무소
·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1401호 (여의도동, 신송빌딩) (우) 407-824
· 전 화 : 02-3478-8200
· 팩 스 : 02-3478-5544
· 입회일 : 2014. 1. 20.

❖ 공증인 고세영 사무소
- 소속 인천지검

· 임명일 : 2014. 2. 3.(임기 5년)
· 소재지 :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62,
301호 (작전동)
(우) 150-923
· 전 화 : 032-554-1700
· 팩 스 : 032-554-1808
· 입회일 : 2014. 2. 4.

❖ 공증인 이정규 사무소
- 소속 전주지검
· 임명일 : 2014. 2. 5.(임기 5년)
· 소재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4, 1층 (덕진동, 대동빌딩)
(우) 561-811
· 전 화 : 063-253-7900
· 팩 스 : 063-255-2828
· 입회일 : 2014. 2. 27.

❖ 공증인 박창수 사무소
- 소속 서울남부지검
· 임명일 : 2014. 5. 19.(임기 5년)
· 소재지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 2동 206호(가산동, 아이티
캐슬)
(우) 153-768
· 전 화 : 02-878-5200, 871-4424
· 팩 스 : 02-871-4422
· 입회일 : 2014. 7. 1.

❖ 공증인 서상철 사무소
- 소속 대전지검
· 임명일 : 2014. 5. 24.(임기 5년)
· 소재지 : 충남 공주시 한적2길 28-3,
3층(신관동, 현대빌딩)
(우) 314-802
· 전 화 : 041-852-7007
· 팩 스 : 041-852-7050
· 입회일 : 2014. 7. 2.

❖ 공증인 김영범 사무소
- 소속 서울북부지검
· 임명일 : 2014. 6. 11.(임기 5년)
· 소재지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78,
402호 (전농동, 대일빌딩)
(우) 130-851
· 전 화 : 02-963-1500
· 팩 스 : 02-963-1503
· 입회일 : 2014. 7. 1.

❖ 공증인 박경태 사무소
- 소속 광주지검
· 임명일 : 2014. 10. 16.
(임기 : 2018. 6. 30.까지 / 정년)
· 소재지 : 전남 순천시 왕지로 16, 2층
(왕지동, 산성빌딩)
(우) 540-330
· 전 화 : 061-725-3246
· 팩 스 : 061-725-3466
· 입회일 : 2014. 10. 17.

❖ 공증인 황규열 사무소
- 소속 청주지검
· 임명일 : 2014. 11. 28.(임기 5년)
· 소재지 : 충북 제천시 칠성로 56, 3층

(의림동)
(우) 390-030
· 전 화 : 043-647-5500
· 팩 스 : 043-647-6500
· 입회일 : 2014. 11. 28.

○ 회원 탈회 ○

(공증인 면직 및 공증사무소 인가취소 등)

❖ 법무법인 서울중앙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대 표 : 강대형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7, 102호 (서초동, 웰컴빌딩)
· 탈회일 : 2014. 1. 20.

❖ 법무법인 계양종합
· 소 속 : 인천지검
· 대 표 : 고세영 · 류 정 변호사
· 소재지 :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62, 301호 (작전동)
· 탈회일 : 2014. 2. 3.

❖ 공증인가 순천제일합동법률사무소
· 소 속 : 광주지검
· 대 표 : 박경태 변호사
· 소재지 : 전남 순천시 왕지로 16, 2층 (왕지동, 산성빌딩)
· 탈회일 : 2014. 10. 16.

❖ 법무법인 공평종합법률사무소
· 소 속 : 수원지검
· 대 표 : 정익군 변호사
· 소재지 :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7, 201호 ~ 202호 (관양동, 한솔센트럴파크 3차빌딩)
· 탈회일 : 2014. 10. 20.

❖ 공증인가 한국합동법률사무소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대 표 : 김두현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인사동 5길 25, 502호 (인사동, 하나로빌딩)
· 탈회일 : 2014. 10. 24.

❖ 법무법인 해우
· 소 속 : 수원지검
· 대 표 : 이성오 변호사
· 소재지 :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33, 5층 (풍덕천동, 금오플라자)
· 탈회일 : 2014. 10. 27.

❖ 공증인 김원기
· 소 속 : 대구지검
· 소재지 : 대구 중구 공평로 55, 3층 (공평동)
· 탈회일 : 2014. 11. 20.

❖ 공증인 박광신
· 소 속 : 청주지검
· 소재지 : 충북 제천시 칠성로 56, 3층 (의림동)

· 탈회일 : 2014. 11. 28.

❖ 법무법인 태안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대　표 : 송준길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22, 701호 (삼성동, 도심공항 터미널)
· 탈회일 : 2014. 12. 30.

❖ 법무법인 인덕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대　표 : 박성훈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48, 3층 (논현동, 건우빌딩)
· 탈회일 : 2014. 12. 30.